

하구복원을 위한 법제 개발의 필요성 및 추진방안

이창희 (changhee@mju.ac.kr) 명지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심영규 (youngs@dau.ac.kr)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 순서

1. 문제 제기
2. 하구관리 법제의 필요성
3. 하구관리 법제 개발의 요건
4. 하구관리 법제 개발 추진 경과
5. 하구관리 법제의 개발 방안
6. 결론

1. 문제 제기

○ 하구의 환경 훼손 심화 및 하구 이용개발에 대한 정책 수요의 변화

- 하구둑 건설 및 하구매립으로 인한 수질악화, 연안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의 활폐화
- 하구 이용의 수요가 과거 농공업 위주에서 주거, 위락 및 생태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 하구의 보존 및 이용개발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의 노출 (특히 해수유통 문제)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1. 문제 제기

○ 하구의 환경 악화 및 생태계 훼손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통합 관리 부재

- 하구환경 보전 및 생태계 복원의 필요성 및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
- 분화된 하구관리체제와 법제 미비로 인해 하구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책 수립이 지연
- 특히 근거법의 부재로 인해 하구순환 복원과 같은 전향적이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 추진에 근본적인 한계 노출



2. 하구관리 법제의 필요성 (새로운 정책 수요)

- 새로운 하구 정책수요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하구정책은 답보 상태

- 하구 공간이용의 변화 (공단/항만 vs. 주택/위락단지)
- 하구 용수이용의 변화 (농공용수 vs. 위락/친수용수)
- 지역경제 활성화 등인 필요 (현상 유지 vs. 신 성장)
- 환경생태에 대한 인식 변화 (개발미의 vs. 지속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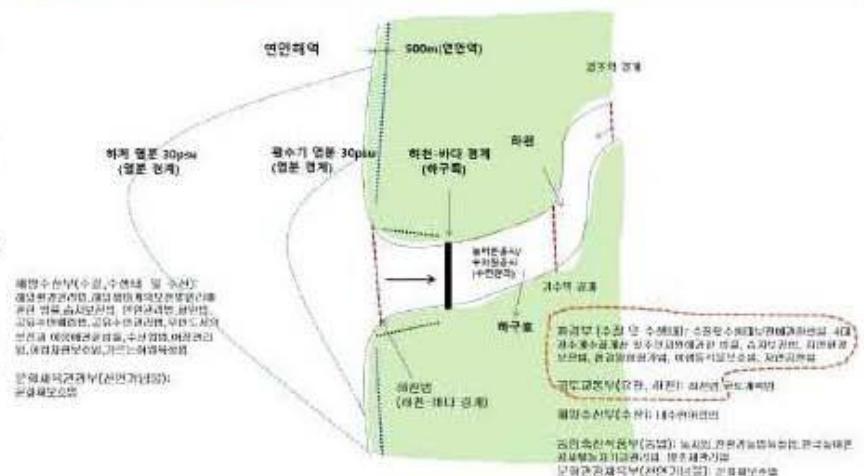
자료: Naver 위성사진(2016).

▶ 하구정책 여건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전향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

2. 하구관리 법제의 필요성 (분화된 관리체제)

- 분화된 관리체제로 인한 관리 책임의 중복/공백)

- 기능적으로 환경(해수부, 환경부) 및 이용 개발(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관리체제 분화 (환경 vs. 개발)
- 공간적으로 환경부(하천) 및 해수부(연안해역)로 환경관리체제 이원화 (육역 vs. 해역)
- 대규모 국가하천 하구에 대한 중앙부처 중심의 의사결정/자치단체 정책수요 반영 미흡 (중앙정부 vs. 지방정부)



하구순환 복원과 같은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한 주관기관 설정 및 역할분담이 필요

2. 하구관리 법제의 필요성 (자치단체의 요구)

○ 충청남도의 보령방조제 복원 추진전략 (충청남도, 2016)

- 새로운 하구 정책 수요를 반영한 전향적 사례



3. 하구법제 개발의 요건 (핵심 요소)

○ 하구의 통합관리를 위한 법제의 개발은 적어도 다음 3 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하구이용과 연관된 다양한 이해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 논의 구조 (하구관리위원회, 하구 프로그램, 하구포럼 등)
- 통합적 하구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정부차원의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하구관리종합계획)
- 통합적 하구 관리를 지원할 법적 근거 (하구관리법, 하구복원법 등)

➡ 지금까지 상기 3개 요건 중 갖추어진 것은 하나도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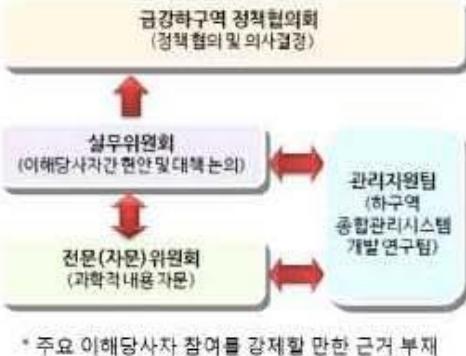


3. 하구관리 법제 개발의 요건 (이해당사자 협의구조)

○ 이해당사자 간 이해상충 및 갈등 조종을 위한 국가 및 지역 차원의 협의/조정 기구 필요

- 중앙 정부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국가 하구관리위원회
- 하구별로 이해당사자간 협의 및 갈등 조정을 위한 지역하구관리위원회 (예: 금강하구해역정책협의회)
- 국가/지역 하구관리위원회는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확보 필요

금강 하구 사례 (해양수산부, 2015)



* 주요 이해당사자 참여를 강제할 만한 근거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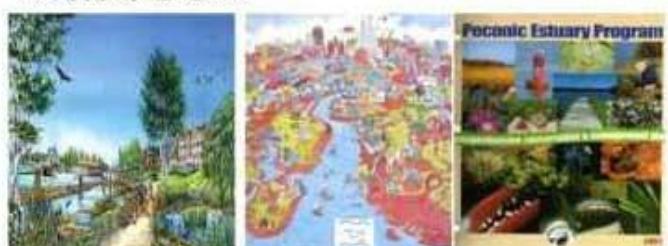
→ 하구포럼, 정책협의회 등 자율적 협의 /조정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적 근거 확보

3. 하구관리 법제 개발의 요건 (하구 통합관리계획)

○ 하구관리의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구를 단위로 하는 통합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이 필요

- 하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개선 및 복원을 위한 통합관리계획의 수립
- 하구별 논의구조(하구프로그램)을 통한 통합하구 관리계획의 수립 및 평가, 각 부처별 계획 이행
- 국가하천 하구의 순환복원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별도의 계획 수립 및 이행 (별도의 추진체계)

자료: 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6)



캐나다 Fraser Estuary Management Plan (FREMP, 2003)

영국 Thames Estuary Management Strategy (TEP,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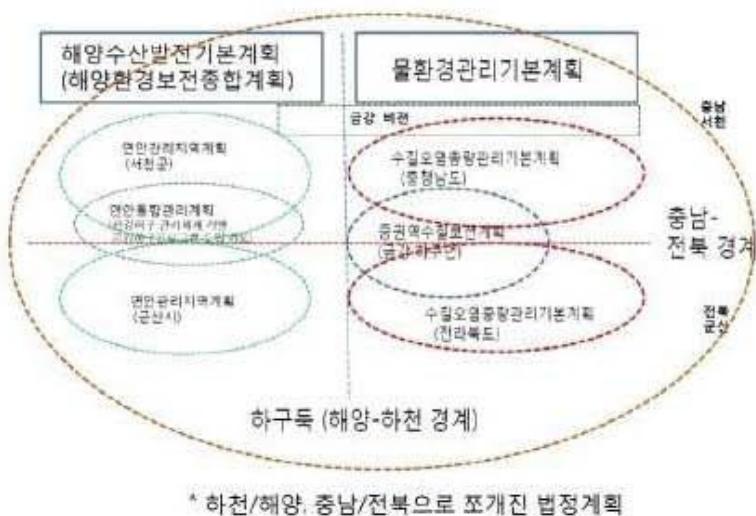
미국 Peconic Estuary COMP (NEP, 2001)

→ 하구관리의 통합성 확보를 위한 통합관리계획의 수립, 이행, 및 평가에 대한 규정

3. 하구관리 법제 개발의 요건 (금강하구의 사례)

○ 관리체제의 분화로 인해 하구관리정책 및 관리계획의 통합성 결여

- 2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접하는 국가하천 하구(예: 금강 하구)의 경우 중앙부처의 계획은 하구둑을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계획은 행정구역을 경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수립
- 기본계획(해수부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환경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충청남도/전라북도), 연안통합관리계획(충청남도/전라북도) 모두 연계성 없이 수립·시행



* 하천/해양·충남/전북으로 조개진 법정계획

3. 하구관리 법제 개발의 요건 (하구관리 법)

○ 하구의 관리 목적에 따라 3개의 다른 프로그램 운영

- 하구연구보전시스템(연안관리법, 해양대기정 주도): 하구고유의 환경 생태 특성을 보유한 하구를 연구교육의 목적으로 보호(28개 소규모 하구/하구의 일부 지역)
- 하구프로그램(정정수법, 환경보호청 주도): 2개 이상의 주정부가 공동으로 대형 하구의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 및 복원 (하구관리위원회(EPA) 주관 28개 대형 하구)
- 하구서식지복원프로그램(하구복원법, 미육군공병단 및 관련부처 통합 프로그램): 구조물 등에 의해 훼손된 하구서식지를 하구순환 등을 통해 복원 (국가하구복원위원회, 주요 이해당사자 순번제 주관)

○ 법적 근거를 가진 프로그램으로 면방정부의 지원 및 주정부가 매칭하는 공동 프로그램임

- 연방부의 지원은 65%(하구서식지복원)~75%(하구프로그램)
- 각 프로그램의 구가 차원의 모니터링은 통합적으로 해양대기정에서 담당

→ 특히 하구복원의 경우 새로운 법 개발이 요구됨



4. 하구관리 법제 개발 경과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6)의 권고에 따라 하구관리 법제화 노력 시작

- 환경부 제1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06~'15)에 하구조사연구, 하구관리체계 개발, 하구복원법 제정 등을 계획 (부처협의가 필요한 사업 미 추진)
 - 해수부는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11~'20)에 건강성회복프로그램, 하구조사연구, 하구역종합관리시스템구축을, 연안통합관리계획('11~'22)에 하구관리체계개발 및 하구프로그램도입 등을 검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업 미 추진)

★ 아직까지 부처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사연구 이외의 분야에 대한 진전은 매우 미흡



4. 하구관리 법제 개발 경과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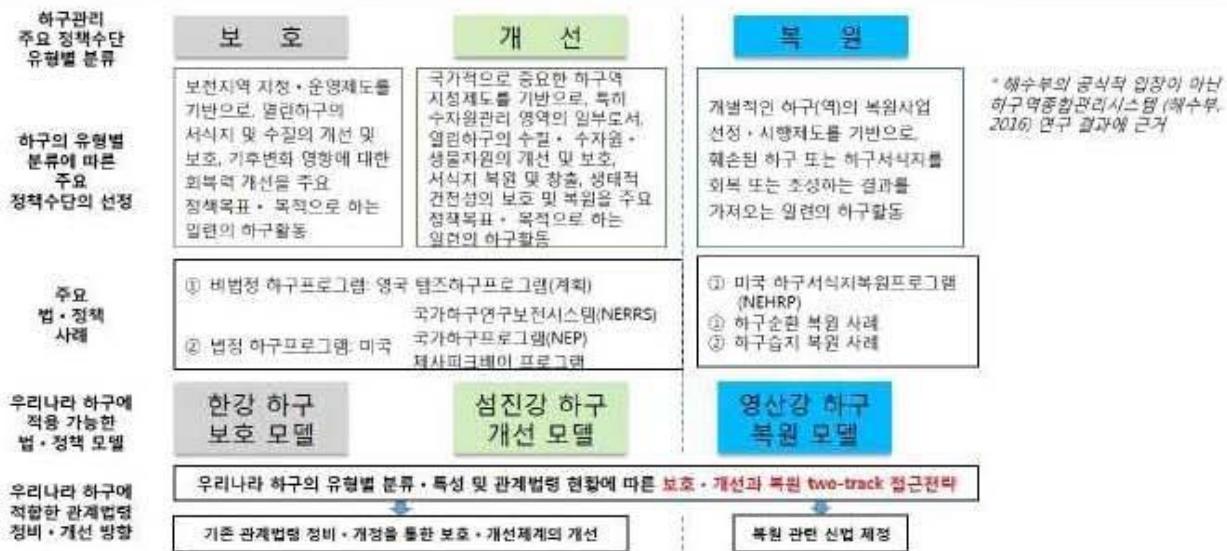
- 환경부(2007)이 제안한 법안을 기초로 제안 부처의 역할 및 기능에 따라 여러 수정안이 제작됨

- 환경부(2007)가 최초로 하구관리법(안) 제안
 - 해양수산부(2009), 국토해양부(2011) 등이 수정안 제시 (주관부처 변경 및 토지관리 수단 포함)
 - 충청남도(2014) 수정안 제안 (광역자치단체의 복원사업지구 지정/시행절차/인허가 및 의제/재원 조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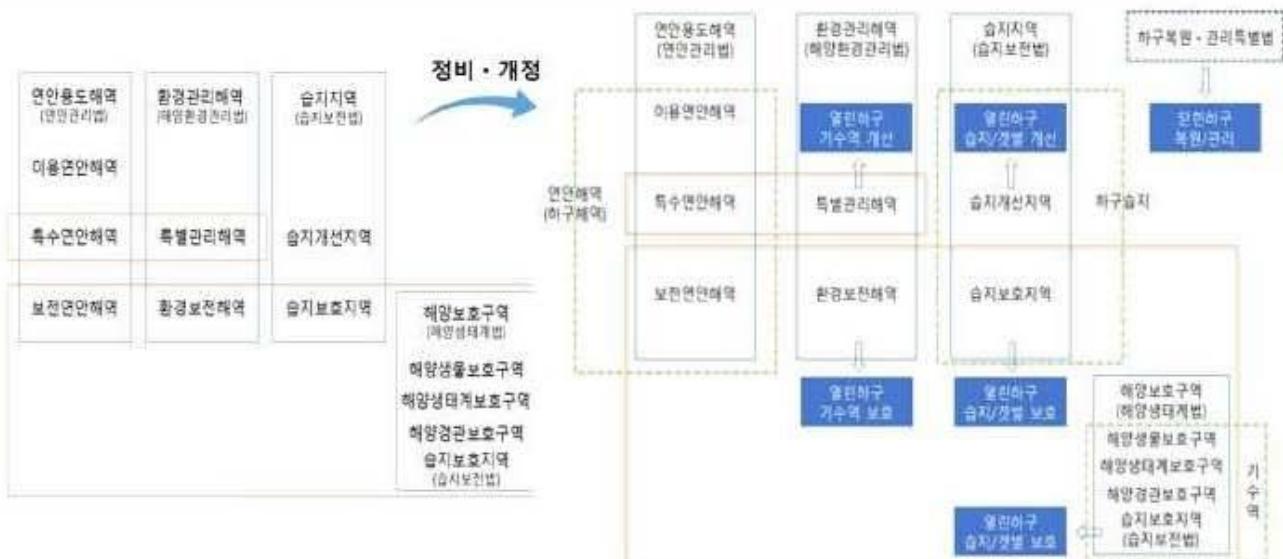
★ 연구 차원에서 수정안이 제시되었으나 관련부처(MOF & MOI)가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음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하구관리의 기본원칙),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국가 등의 책무), 제7조 (주요 시책의 협의 등)
 - 제2장 하구의 통합 관리 : 제8조(하구 역별 통합 관리의 원칙), 제9조(하구환경·기초조사 등) 제10조(하구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1조(하구별 하구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2조(하구별시행계획의 신청과 승인) 제13조(하구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제14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15조(종합계획 등의 준수) 제16조(국가하구관리위원회) 제17조(하구관리실무위원회) 제18조(하구별 지역하구관리위원회)
 - 제3장 대외협력 등 : 제19조(국제 하구보전·관리 협력의 추진), 제20조(남·북한 하구보전·관리 협력)
 - 제4장 하구보호구역의 지정·관리 등 : 제21조(하구보호구역의 지정·관리), 제22조(하구보호구역의 지정·변경절차), 제23조(하구보호구역의 관리종합계획), 제24조(하구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등), 제25조(하구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26조(증거의 제출 등), 제27조(하구보호구역의 도지 등의 애수), 제28조(하구보호구역의 주민지원 등), 제29조(하구보호구역의 우선이용 등), 제30조(하구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협의)
 - 제5장 하구의 개선 및 복원 : 제31조(개선 및 복원 대상 하구의 선정), 제32조(하구의 개선·복원대책의 수립·시행), 제33조(하구개선·복원계획의 수립)
제34조(개선·복원계획의 내용) 제35조(개선·복원계획의 변경), 제36조(하구의 개선·복원사업의 시행자), 제37조(하구의 개선·복원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38조(비용의 부담) 제39조(임면자 부임)
 - 제6장 보 칙 : 제40조(하구환경보전협약금) 제41조(하구환경보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관리), 제42(기금의 재원) 제43(기금의 유통 등) 제44조(사업 위, 어가 등의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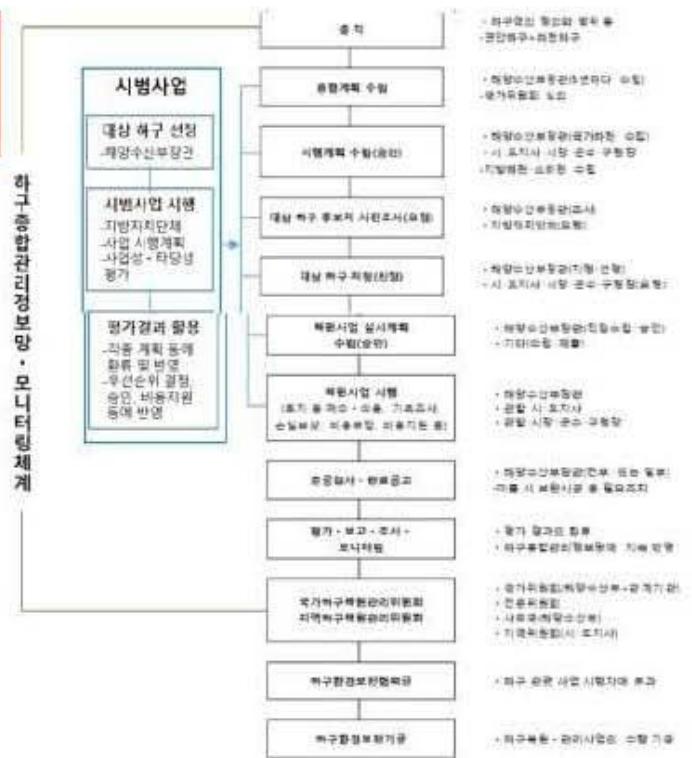
4. 하구관리 법제 개발 경과 (해수부 검토 안)*



4. 하구관리 법제 개발 경과 (해수부 검토 안)*



(가칭)「하구의 지속가능한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법률안



4. 하구관리 법제 개발 경과 (해수부 검토 안)*

(가칭)「하구의 지속가능한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하구의 복원·관리의 기본 원칙)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주요 시책의 편의 등)

제2장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8조(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9조(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0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11조(하구종합관리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제3장 복원 및 관리 대상 하구의 지정 및 시범사업 등

제12조(복원 및 관리 대상 하구 후보지에 대한 사전조사)

제13조(복원 및 관리 대상 하구의 지정)

제14조(마구복원 시범사업 대상 하구의 선정)

제15조(시범사업의 시행)

제16조(시범사업 시행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제4장 복원사업의 시행 및 평가·관리 등

제17조(하구의 복원사업의 기본지침)

제18조(복원사업의 시행자)

제19조(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인·허가 등의 의제)

제21조(복원사업의 시행 범위)

제22조(토지 등의 매수 또는 수용 등)

제23조(기초조사 등)

제24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25조(비용의 부담)

제26조(원 인자 부담)

제27조(비용의 우선 지원)

제28조(준공검사)

제29조(복원사업 원료의 공고)

제30조(복원사업의 평가)

제31조(복원사업의 보고 및 조사)

제32조(복원사업의 모니터링)

제33조(복원사업에 대한 보호구역 등의 지정 의제)

제34조(기술개발의 지원 등)

제35조(신문언론의 양성·관리 및 전문기관 지원)

제5장 국가하구복원관리위원회 등

제36조(국가하구복원관리위원회)

제37조(진 من위원회)

제38조(국가하구복원관리사무국)

제39조(지역하구복원관리위원회)

제6장 보칙

제40조(하구환경보전협력금)

제41조(하구환경보전기금의 설치·운용)

제42조(기금의 재원)

제43조(기금의 용도)

제44조(사업 인·허가 등의 통보)

제45조(관련기관의 협조)

제46조(국고보조)

제47조(관련 위임 및 위탁)

제7장 벌칙

제48조(과태료)

부칙

5. 하구관리 법제 개발 방안 (법제화 과정의 문제)

하구관리 법제화를 다음과 같은 문제의 극복이 필요

1. 환경부·해수부 관할의 중복으로 인해 단일 부처에서 추진하기에는 한계
2. 하구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률을 만들 때 기존 법과의 중복 및 상충
3.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조정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추진 세력의 부재

5. 하구관리 법제 개발 방안 (입법 추진방안)

1안: 의원입법을 통한 접근*

- 하구는 주요 자치단체에 걸고루 분포 (입법 영향이 전국적)
- 하구별 하구프로그램의 구축 및 운영 (지역중심의 선진 참여형 관리체제)
- 하구순환 복원 등을 통해 지역 환경 개선 및 경제 활성화 지원
- 행정입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관리체제 제안 가능

2안: 행정입법을 통한 접근

- 하구 관리를 위한 기존 환경관리 수단의 보완 및 차별화 가능
- 하구관리를 위한 주관 부서가 아닌 경우 추진 동력 미약/상실
- 상대적으로 관계 부처의 이해에 따라 입법 추진에 어려움 발생

→ 법제 개발의 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구순환 복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가 필요

*현재 농해수위(해수부 안) 및 환경노동위(환경부 안) 법안 상정이 추진 중

5. 하구관리 법제 개발 방안 (기존법과의 상충 문제)

1안: “하구(역)” 특정 관리구역에 대한 관리 규정을 포함하는

“하구관리법(가칭)” 제정: 환경부(2007)안

- 하구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 개선, 복원을 위한 관련 규정 포함
- 부처 합의가 되는 경우 공동입법 추진
-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경우 실행법의 개정 또는 제정이 필요 (실행법 vs. 기본법)

2안: 하구(역)의 보호, 개선은 기존법의 개정을 통해 복원은

“하구복원법(가칭) 제정을 통해 추진: 해수부(2017)안

- 하구 보호/개선은 기존의 조항 개정을 통해 가능 (습지보호법, 수질 및 수생태보전에 관한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 현재 관할권이 불명확하고 복원의 목적에 따라 주관부처가 달라질 수 있는 복원(하구순환)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하구복원법(가칭) 제정추진 (하구호 수질개선, 하구습지의 복원, 기수생태계 복원, 하구수산자원기반 복원,)
- 순환복원의 목표와 결과에 따른 시행부처와 관리부처의 역할 재설정

5. 하구관리 법제 개발 방안 (환경부-해수부 관할권 문제)

1. 하구 관리를 위한 “환경부-해수부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 하구 관리를 위한 기본원칙에 합의 (기수 vs. 담수)
- 현재 관할권을 고려한 기능별/영역별 업무 분장
- 중복 관할권에 대한 기능별/영역별/규모별 관할권 조정
- 새로운 정책(순환 복원)에 관한 주관부처 협의 (단일 vs. 공동 vs. 특별 추진체계)

2. 협의의 수준에 따른 단계별 “국가하구정책” 설정 및 이행

- 공동 하구조사연구지침, 공동 연구사업 추진 (1단계)
- 하구역 공동 환경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운영 (2단계)
- 현재 관할권(주로 보호, 개선 사업 위주)을 고려한 국가 하구정책 수립 및 이행(3단계)
- 하구순환 복원 등 신규정책에 대한 업무분장 (4단계)

5. 하구관리 법제 개발 방안 (사고의 전환)

사고의 전환만 이루어 진다면 우리는 건강한 하구를 만들 수 있고, 그 편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음. 그러나



결론

- 하구관리를 위한 법제 개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 부재했음
- 하구 보전/이용/개발과 연관된 기존의 사고를 벗어난 전향적 의식전환 및 공유가 필요
- 하구 관리 법제 개발을 위한 논의를 벗어나 이 해당사자의 실질적 노력과 행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임
- 신정부에서의 하구법제 개발을 위한 이러한 논의는 하구환경정책 전환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음